



영국 '2007년 연금법'

I. '2007년 연금법'의 개요

영국의 '2007년 연금법' (Pensions Act 2007)은 기본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과 국가 이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을 개혁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영국의 국가연금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는 중요한 입법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개인 연금계좌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보호자(carer)와 여성에 대한 국가 연금 체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10년 4월 6일 이후에 국가 연금 수혜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는 기본 국가 연금을 완전히 수령하기 위한 국가 보험료 납부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둘째,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을 2046년까지 68세로 점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셋째, 이 법은 기본 국가 연금을 소득에 연동시키고, 국가 2차 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 법은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4장은 영국 전역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에만 적

용되는 8조와 부속서 7의 part 4를 제외한 나머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만 효력이 있다(제29조). 또한 이 법의 조항 중에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 정부의 명령으로 지정된 날에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 그리고 법안 통과 후 2달 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 등이 있다(제30조).

이 법의 모태는 2005년 터너 경(Lord Turner)이 이끈 연금 위원회(Pensions Commission)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발표된 백서, “은퇴 후의 보장: 새로운 연금 체제를 향하여 (Security in Retirement: towards a new pension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 백서가 발표된 후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쳐 2006년 11월 29일 연금법안(Pensions Bill)²⁾이 만들어졌고, 이후 하원(House of Commons)과 상원(House of Lords)의 논의를 거쳐, 2007년 7월 26일 여왕의 승인(royal assent)을 얻어 공식적인 법이 되었다. 이 법안은 비교적 치열한 공방 끝에 통과되었는데, 먼저 하

*** -----

1) <http://www.dwp.gov.uk/pensionsreform/whitepaper.asp>

2)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607/cmbills/012/2007012.pdf>



원에서 통과된 법이 2007년 4월 19일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원에서는 연금 보호 특별 기금 (pension protection lifeboat fund)과 청구되지 않은 자산 기구(unclaimed assets agency)를 창설 하는 수정안을 내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다시 이 수정안을 거부하였고, 이후 하원과 상원을 오가며 논의된 끝에 정부가 2014년까지 법안의 시행에 대한 후속 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제24조)을 받아들임으로써, 2007년 7월 26일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었다.³⁾

II. '2007년 연금법' 의 구조

'2007년 연금법' 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고,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부속서(schedule)가 첨부되어 있다.⁴⁾ 그리고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이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주석서(Pensions Act 2007: Explanatory Notes)⁵⁾도 참조할 수 있다. '연금법' 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국가 연금

- A연금과 B연금에 대한 권한
- 기본 국가 연금에 대한 보조금

- 기본 국가 연금과 다른 급여의 상향 조정
- 추가 연금: 추정된 수입 요소
- 추가 연금: 적립율의 간소화
-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의 상향조정

제2장: 직업 연금과 개인연금체제

- 보장된 최소 연금의 전환
- 정의된 보험료 연동 연금 체제에 대한 외주 계약의 폐지
- 분쟁 해결 조정
- 계리 지침에서 정부 역할의 삭제
- 재정 보조 체제: 향상된 지불 수준
- 연금 수령권 구입에 대한 일시적 제한

제3장: 개인계좌전달청

제4장: 일반

부속서

- 부속서 1: 국가 연금: 결과적 수정사항과 관련 수정사항
- 부속서 2: 추가 연금: 간략화된 적립율
- 부속서 3: 남녀 연금 연령의 증가
- 부속서 4: 정의된 보험료 연동 연금 체제에 대한 탈퇴의 폐지

3) 연금 법안의 통과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pabills/200607/pensions.htm>

4) http://www.opsi.gov.uk/acts/acts2007/pdf/ukpga_20070022_en.pdf

5)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ensions Act 2007: Explanatory Notes, 99-104. (http://www.opsi.gov.uk/acts/en2007/ukpgaen_20070022_en.pdf)

- 부속서 5: 계리 지침의 승인에서 정부 역할의 폐지
- 부속서 6: 개인계좌 전달청
- 부속서 7: 폐지와 취소

III. 영국 연금 제도의 개요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에 따르면 국가 연금에는 A, B, C, D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A연금은 보험료를 납부 사실이 있어야 지급되는 연금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한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국가연금과 근로기간의 소득(또는 추정 소득)에 의존하는 추가국가연금(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나뉜다. B 연금 역시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기본국가연금과 추가국가연금으로 나뉜다. 이것은 배우자나 동반자(civil partner)⁶⁾의 근로기간이나 수입에 따라 제공된다. 현재 C연금은 폐지되었다. D연금은 보험료 납부 사실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연금이다. 이것은 나이가 80살이 되었고, 특정 거주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리고 다른 국가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거나, D연금으로 받을 연금보다 수혜 연금이 적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IV. 국가 연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A연금과 B연금에 대한 은퇴 연금 권한 부여 - 남녀 단일기준(제1조)

A연금은 보험료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 개정 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75년 4월 6일 이후의 어떤 세금연도에 실제로 Class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5/1976부터 1977/1978까지 주당 최저수입 한도의 최소 50배의 수입에 대한 보험료, 1978/1979년 이후부터 세금 연도에 대한 주당 최저수입 한도⁷⁾의 52배의 수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Class 2와 Class 3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동등한 횟수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75년 4월 6일 이전의 어느 시기에 50배의 고정비율(flat-rate)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완전한 요율의 수당을 받을 권한을 가진 재직 자격 연한(qualifying years)을 달성했어야 한다. 자격 연한은 남자는 44년, 여자는 39년이였다.

‘2007년 연금법’은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의 부속서 3을 개정하여, A연금 또는 B연금에 대한 연금 보험료 납부 조건을 수정하였다(제1조). 2010년 4월 4일 이후로 국가 연금 연령(pensionable age)에 도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A연금과

*** -----

6) 2004년 시민 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2004)에 따른 동성(same sex) 파트너를 말한다.

7) 저수입 한도(lower earnings limit)란 어떤 사람이 국가 보험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당 수입의 최저액을 말한다. 현재는 주당 87파운드(약 16만원)로 되어 있다.



B연금의 현재 보험료 납부 조건은 남녀가 동일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새로운 조건이 B연금의 연금 청구자의 배우자나 동반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여기서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2010년 이후에 연금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또는 그 나이에 도달하지 않고 그 날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2010년부터 국가 연금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자격 연한 최소 기간은 남녀 모두 30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10년 4월 6일 이후에 국가 연금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과 사별급여(bereavement benefits)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보험료 납부 조건이 계속 적용된다.

2. B연금에서 권한 제한의 폐지(제2조)

또한 ‘연금법’은 ‘1992년 사회보장 보험료와 급여에 관한 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의 48A조를 개정하여 B연금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에는 기혼 여성이 남편의 보험료에 근거하여 B연금을 받으려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둘 다 국가 연금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그녀의 남편이 A연금의 보험료 납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A연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그녀의 남편 A연금의 연기를 선택하면, 그 이익분은 아내의 B연금에 추가될 수 있다. 만약 그녀의 B연금이 최소 12달 동안 연기된 경우에는 그녀는 또한 일시 지급(lump sum payment)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B연금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A연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만 그러하다. 따라서 그녀의 B연금에 관하여 이익분이

나 일시지급액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A연금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2007년 연금법’은 이 청구 요건을 폐지했다. 이 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기혼 부부나 동반자 중 한 사람이 A연금을 연기하고 다른 사람이 연금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B연금을 청구하거나, B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이익분 또는 일시지급액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나 동반자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B연금에 의존하게 될 정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3. 관련 부모와 보호자(carers)에 대한 보험료 보조(제3조)

가정 책임 보호(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는 어린이나 또는 환자,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 고용에서 배제된 사람의 기본 국가연금이나 사별 급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1978년 이래의 완전한 세금 연도에 대해 유효하다. 가정 책임 보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본 국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년 햇수를 절반까지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하로는 줄이지 않는다. 2010년부터는 남성에게는 2년 이하로 줄이지 않는다. 국가 연금 연령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가정 책임 보호에 의해 단축될 수 있는 재직 연한 제한은 여성에 대해서는 20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연금법’에서는 ‘1992년 사회

보장 보험료와 급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0년 4월 6일부터 연금수혜연령에 도달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이나 그들의 배우자나 동반자에게 연금수혜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사별하여 홀로 남겨진 배우자나 동반자에게 지불되는 사별 수당과 남겨진 부모 수당은-보험료 납부자가 2010년 4월 6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새로운 보조금을 참조하여 계산된다.

4. A와 C퇴직 연금: 성인 부양자 추가금(adult dependency increase)의 폐지(제 4 조)

성인 부양 증가는 피부양자의 수입, 직장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이 정해진 총액(일반적으로 주당 59.15파운드)을 넘지 않고, 성인 부양 증가보다 더 큰 액수의 연금이나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연금의 성인 부양자 추가금은 현재 부인, 남편, 그리고 연금수령자의 아이(들)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지불된다.

하지만 '2007년 연금법' 제4조는 '1992년 사회보장 보험료와 급여에 관한 법'에서 부인(제83조), 남편(제84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제85조)에게 성인부양자 추가금을 지급하는 효력을 2010년 4월 6일부터 정지시키도록 했다.

5. 기본 국가 연금과 기타 급여의 상향 조정 (제 5조~제 8조)

현재 기본 국가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검토하여 정한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도입된 국가 연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 최소 보

장을 수입을 기준으로해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저수입 한도는 물가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된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수당이나 연금, 사별 연금 등도 마찬가지로 물가에 연동된다.

'2007년 연금법'은 행정법(Administration Act)에 일부 조항을 삽입하고 수정하여, 기본 국가 연금이 물가가 아니라 수입에 따라 매년 조정되도록 하였다.

6. 추가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추정 수입 요소 (제 9조)

2002년에는 국가 2차 연금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일한 기간의 소득(또는 추정 소득)에 의존하는 추가적인 국가연금이다. 이에 대해 '2007년 연금법'은 '1992년 사회보장 보험료와 급여에 관한 법'에 일부 조항을 삽입하여, 소득이 저소득의 경계 지점에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렸다.

7. 추가 연금: 적립율(accrual rate)의 간소화 (제10~12조)

'2007년 연금법'은 '1992년 사회보장 보험료와 급여에 관한 법'의 부속서 4A를 개정하여, 국가 2차 연금을 재구성했다. 원래 소득 기준은 저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Band 1), 저소득 기준은 넘지만, 고소득 기준의 시작기준은 넘지 않는 경우(Band 2), 고소득 기준의 시작 기준점은 넘지만, 고소득 한도 기준은 넘지 않는 경우(Band 3)로 나뉘어졌었다. 하지만 '2007년 연금법'은 인해, 저소득 한도의 기준점을 넘는 모든



소득은 Band 2로 통합했으며, 이것은 2010-2011 세금연도부터 적용된다.

8.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의 상향조정(제13조)

현재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은 65세이다. 원래 여성의 수혜 연령은 60세였으나, 이것은 ‘1995년 연금법’ (Pensions Act 1995)에 의해 남녀차이를 없애서, 1940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던 양성간의 불평등을 폐지한 바 있다(단,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2007년 연금법’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0년마다 1년씩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제13조, 부속서3). 2024년 4월에서 2026년 4월 사이에는 65세에서 66세로, 2034년 4월부터 2036년 4월 사이에는 67세로, 2044년 4월부터 2046년 4월 사이에는 68세로 상향조정된다. 이것은 1959년 4월 5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가 연금 수혜 연령이 도달할 때, 여러 사회보장 급여가 지불되거나 중단되는데, 이것 역시 국가 연금 수혜 연령 상승에 따라 상향조정되었다. 이로써 구직자 수당, 무능력 수당, 사별 급여, 국가 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V. 기타 개정 내용

1. 보장된 최소 연금의 전환(제14조)

‘1993년 연금 체제 법’ (Pension Schemes Act 1993)의 제13조부터 제23조는 국가보험에서 탈

퇴한(contracting-out) 임금관련 직장 연금 체제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들었다. 그것은 1978년 4월 6일부터 1997년 4월 5일 사이의 직장 체제에 의 회원가입을 통해 구각 수입 관련 연금 체제로부터 배제된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7년 4월 6일부터 여기에 적용되는 조건은 간소화되었고, 보장된 최소 연금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는 그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연금위원회 백서에서는, 보장된 최소 연금에 대한 회원의 권리를 일상적인 체제 연금에 대한 권리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것은 체제 자신의 규칙에 따라 계산되며, 회원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달려 있다. 보장된 최소 연금 전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체제는 통일적이고 간소화된 급여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행정을 간소화했고,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었다. 그들이 이러한 편의를 이용할 것인지는 체제의 수탁자가 결정하게 된다.

2. 정해진 보험료 연동 연금 체제에 대한 탈퇴(contracting-out)의 폐지(제15조)

국가보험에서 탈퇴하게 되면, 사적영역이 국가 2차 연금을 대신하게 된다. 탈퇴함에 따라, 피고용인들은 그들이 탈퇴한 연도 동안 그들의 추가 국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낮은 요율의 국가 보험 보험료를 지불하고(또는 하거나) 지불한 것들을 그들의 연금 체제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고정 보험료를 기초로 하거나, 고정 급여(임금 관련)를 기초로 하는

직업 연금 체제에 허용된다. 국가보험에서 탈퇴한 개인 연금체제는 적절한 체제로 간주된다. 또한 탈퇴한 경우 세금-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에서 그에 대한 증명서(contracting-out certificates)를 발급한다.

하지만 '2007년 연금법'은 정해진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탈퇴하는 직장연금과 개인연금 탈퇴 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탈퇴 증명서는 취소된다.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국가 2차 연금으로 복귀하게 된다.

3. 분쟁 해결 조정(제16조)

현재, 직장 연금 체제의 수탁인 또는 관리인은 그 체제에 관련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공식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이 분쟁 해결 절차는 두 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수탁인이 지정한 자가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인에게 문제가 이송된다.

하지만 '2007년 연금법'은 '2004년 연금법'의 제273조를 개정하여, 이 두 단계의 절차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수탁인이나 관리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⁸⁾ 그러나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며, 그들이 원한다면, 두 단계 절차를 유지할 수 있다.

4. 계리 지침에서 정부 역할의 폐지(제17조)

계리사가 연금체제의 책임을 일관되게 계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은 합의된 지침(guidelines)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은 지침서(Guidance Notes) 또는 기술 규약(technical memorandum)이라는 이름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계리 전문직 협회(the Institute of Actuaries in England and Wales and the Faculty of Actuaries in Scotland)에서 이러한 문서를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규제로서의 역할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혼합되었던 형태였다.

하지만 2005년 제출된 모리스 보고서(Morris Review of the Actuarial Profession)⁹⁾는 영국의 기업 보고와 지배에 대한 독립 규제위원회인 '재무 보고 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회계 기준을 작성하고, 계리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계리사가 기준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재무 보고 위원회가 '계리 기준 위원회'(Board for Actuarial Standards)를 만들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4월 6일 이 위원회에서 지침서와 기술규약을 채택했다. '2007년 연금법'의 제17조, 부속서 5는 이들

*** -----

8) 이것은 2002년 발간된 녹색(green paper)에서 제안된 내용이기도 하다.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implicity, Security, and Choice: Working and Saving for Retirement 참조. (<http://www.dwp.gov.uk/consultations/consult/2002/pensions/ch1-4.pdf>)

9) 모리스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www.hm-treasury.gov.uk/independent_reviews/morris_review/review_morris_index.cfm



지침을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로써 계리 관련 지침은 정부가 아닌 독립 규제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5. 재정 보조 체제: 증가된 지불 수준(제18조)

‘2004년 연금법’의 제286조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보조체제(Financial Assistance Scheme)를 설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보조체제는 2004년 5월 14일에 발표되었다. 그 목적은 고용인의 파산으로 인해, 연금 체제의 중요한 총액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체제의 세부사항을 정한 규칙은 2005년 7월에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규정은 2005년 9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한다. 이 재정보조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나이, 예상 연금, 최소 총액 등의 제한이 있었는데, ‘2007년 연금법’은 ‘2004년 연금법’의 286조를 개정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였다. 특히 나이와 관련된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6. 개인계좌전달청(제20~23조)

연금위원회의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개인 계좌 체제를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개인 계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계좌 체제의 전달과 관리가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장 연금운용과 관련한 행정

경험을 가진 개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조직들 중에는 개인계좌 체제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능력과 기술을 가진 조직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2007년 연금법’은 개인계좌전달청(Personal Accounts Delive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개인계좌체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제20조). 이 관청은 개인계좌에 관한 관련된 제안의 이행과 그에 관련된 조언을 준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할 수 있다(제21조). 여기서 관련된 제안이란 국가적인 저비용의 간편한 연금 저축 체제(pensions savings scheme)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 또는 그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관청은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과 구조에 대해서는 부속서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7. 법 운영 보고서(제24조)

정부는 2014년까지 ‘2007년 연금법’ 조항들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후속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